조선대 동북아연구소 Vol.25 No.1 2010 pp.1~21

한국 보훈정책의 현실과 개선방향

김 성 대*

목 차

Ⅰ. 서 론
Ⅱ. 주요국의 보훈정책
Ⅲ. 보훈정책의 현실
Ⅳ. 보훈정책의 개선방안
Ⅴ. 결 론

〖논 문 요 약〗

이 논문의 목적은 열악한 한국의 보훈정책을 선진 주요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의 안보상황과 경제수준에 합당한 보훈정책 개선안을 제시하여 그 해결방안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에 있어서 안보란 개인의 건강과 같다. 개인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듯이 국가도 안보가 무너지면 개인의 경제활동, 국가위상 및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아무것도 보장 될 수 없다. 국가안보란 튼튼한 국가경제를 바탕으로 한 국방력이 중요하고 튼튼한 군대와 굳건한 호국정신으로 이루어진다. 굳건한 호국정신은 국가 危難시 기꺼이 목숨을 바쳐 국가를 지키겠다는 殺身報國의 정신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쳐 싸운 참전용사와 제대군인에게 공훈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충분히 해주었을 때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보훈예산에 있어 미국의 2.8%, 호주의 5.5%, 대만 2.4%에 비하여 1.7%로써 너무 열악하다. 선진 주요국가보다도 안보상황과 제대군인의 숫자와 주변강대국의 영향 속에 시달려온 지난 역사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주요국보다 더 많은 예산과 행정조직, 시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갑작스런 보훈예산 확대 및 예산에 대한 충격이 뒤따르므로 1~2년안에 2%수준으로 끌어올리고 5년안에 0.1~0.2%씩 끌어올려 선진국 수준인 3%를 유지하고 정부기구인 보훈처를 보훈향군부로 격상 개칭하여 800만 제대군인(재향군인회 전원)을 완전수용·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보훈처장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국회 내에 보훈·향군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시로 보훈정책 예산을 책정하여 획득·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보훈단체와 일반제대군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민주적인 조직으로 개혁하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강력한 구심점이 되어 보훈정책개선안에 대하여 국회의원 및 정치권과 대국민에게 홍보하고 설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재향군인회처럼 국회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 기록 분석하여 우호적인 인사와 비우호적인 인사로 분류하여 우호적인 인사는 선거 시 적극 당선시키고 비우호적인 인사는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낙선시킴으로서 정치권의 관심과 배려를 얻어내어 보훈정책개선안을 실현하여야 한다.

주제어 : 국가안보, 보훈정책, 호국정신, 보훈지원, 보훈정책

*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www.kci.go.kr

Ⅰ. 서 론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보훈예산과 보훈행정 규모 그리고 시혜대상이 적어 보훈선진국에 비하여 열악하다. 개인에 있어서는 금전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성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명언이 있듯이 국가도 안보가 무너져 나라가 망하면 개인의 경제활동과 국가위상 및 개인의 자유와 행복 등 아무것도 保障 될 수 없다.

이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북한의 三代에 걸친 權力世襲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 북 핵실험과 단거리·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안보의 위협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천안함 사태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 강대국의 영향 속에 시달려온 지난 역사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 안보와 국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처럼 중요한 안보란 튼튼한 국가경제를 바탕으로 한 튼튼한 국방력이 중요하다. 국방력이란 튼튼한 군대와 굳건한 호국정신으로 이루어지며 굳건한 호국정신은 국가가 危難 시 기꺼이 목숨을 바쳐 국가를 지키겠다는 애국·호국정신으로서 이는 곧 殺身報國의 정신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쳐 싸운 참전용사와 제대군인의 공훈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충분히 해주었을 때 생길 것이다.

국가보훈이란 나라에 따르고 역사적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리 사용되었다.[1] 즉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보면 국가보훈의 개념은 삼국시대에 있어서는 호국정신과 효성의 고취, 고려시대에는 국가개창 및 삼국통일에의 기여와 국왕에 대한 충성, 조선시대에는 호국과 충성[2]으로 그 상징적의미가 조금씩 달라져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국가보훈"이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하는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이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3]을 의미한다.

또한 나라와 시대에 따라 국가와 사회,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개념이 달랐다고는 하지만 국가보훈이 잘될 때 국가는 융성·발전했으며 국가보훈이 약해질 때 국가는 쇠퇴하였다.[4] 이 점은 국가보훈이 곧 국가의 興亡盛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는데, 이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세계 최고 강국인 미국, 세계 최고문화국가인 영국, 기타 선진국들의 발전과 연관시킨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국가보훈의 중요성[5]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그 나라의 보훈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훈정책 예산과 보훈행정규모 그리고 시혜대상 규모로 판단 할 수 있다. 한국의 보훈정책은 현재 처해있는 안보상황과 지정학적 위치로 주변강대국의 영향 속에 시달려온 지난 역사의 교훈 및 현재 800만명의 제대군인이 존재하는 우

1) 유영옥, 2003, 「국가보훈학의 개념정립과 연구방법론」, 서울: 한국보훈학회, pp.7-8.
2) 국가보훈처, 서울: 2002, 「국가와 보훈」, p.82.
3) 국가보훈처, 서울: 2002,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p.17.
4) 국가보훈처, 2002,「함께하는 보훈문화」, 서울, p.400.
5) 유영옥, 『국가보훈학』, (서울: 홍익제, 2005), p.506.

www.kci.go.kr

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과 호주·대만에 비하여 볼 때 보훈예산과 행정조직, 시혜대상과 내용 등에서 열악하다. 이런 열악한 보훈정책으로 인하여 참전용사와 제대군인인 재향군인회 회원이 푸대접을 받고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보다도 더 손해보고 바보가 되는 우리의 열악한 보훈정책의 현실이 바로 합법을 가장한 병역기피와 양심을 빙자한 병역거부 급기야는 국적포기라는 사회적인 병리현상을 낳게 되었다.

이런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도 보훈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합당한 보훈정책을 제시하고, 특히 대안 및 해결방법을 필자가 광주·전남 재향군인회장과 전국 시·도회장 협의회장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총회에서 심의·통과 되었던 내용과 보훈정책의 개선내용[6]을 중심으로 현실 가능한 검증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주요국의 보훈정책

주요국은 보통 미국·캐나다·호주·대만·프랑스·일본 등을 예로들 수 있으나 서양의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과 호주의 보훈정책을 살펴보고 동양에서는 대만의 보훈정책을 살펴 한국의 보훈정책과 비교하고자 한다. 보훈정책은 각 국의 보훈조직과 행정대상 예산·주요업무 등을 고찰 비교하고자 한다.

1. 미국의 보훈정책

1) 미국의 보훈조직, 행정대상, 예산 주요업무

[표 1] 미국의 보훈조직, 행정대상, 예산 주요업무

구분	기관명	기관위상	공무원수	산하조직	행정대상	예 산('04)	주요업무
미국	보훈부	장관, 독립기구	235,978명 ('05.5)	지방청57개 보훈병원 157개 요양,진료 1,333개등 국립묘지 120개	2,600만명 (8.8%) 군복무상이자 및전사자유족 참전군인 제대군인 (180일이상)	US$677억/ 24,000억 (정부예산의 2.8%)/81조원	보상금/연금지급 의료·취업·대부안장지원 생명보험사업 휴양시설운영 기념사업

출처: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국가와 보훈(2005.7.5)에서 필자가 발췌 정리하였음.

6) 광주·전남재향군인회, 「광주·전남향군신문」, 제49호(2005.7.21), p.2.

www.kci.go.kr

미국의 보훈조직의 기관명은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이며 위상은 장관급으로 독립기구이며 공무원 숫자가 23만5천여명으로 국방성 다음으로 크고 장관급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원의원 14명과 하원의원 30명 계32명으로 향군위원회가 구성되어 수시로 예산등을 책정·획득, 지원하고 있다.[7] 또한 산하조직으로는 지방청 57개와 보훈병원 157개, 요양진료 1,333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묘지도 120개를 운영하고 있다.[8]

2001년 예산규모면에서는 14개 행정부 부서 중 7번째 규모이며 직원규모는 14개 부서 중 국방성에 이어 두 번째 독립청까지 포함하면 국방성, 체신청에 이어 세 번째로 방대한 부처이다.[9] 무엇보다도 특별한 것은 행정대상 일원이 2,600만명으로서 국민의 8.8%에 이르며 가족 4,700만명을 포함한 총 7,000만명 이상에게 보훈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는 전 국민의 약 1/4에 해당되며 이 일원이 안보, 호국세력이 되어 전 국민을 선도하고 있다.[10]

보훈예산은'04년 기준으로 정부예산의 2.8%로 US$ 677억/24,000억으로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하면 81조원에 이른다. 주요업무로는 보상금/연금지급과 의료·취업·대부·안장지원 생명보험사업, 휴양시설운영, 기념사업 등을 하고 있다.

2) 미국의 보상금 지원

[표 2] 미국의 보상금지원

구분	상이자 본인	특별급여	미망인	자 녀	부 모
미국	상이보상금(10등급) - 상이도 10~100%까지10%단위로 구분 - 상이도 증가에 따라 보상금지급 수준 누증	특별중상이자수당 부양가족 수당 피복 수당	미망인 보상금 부양가족 수당 - 자녀수당 (장애자,취학 자녀별도)	18세미만 유자녀보상금 - 자녀수에 따라 차등	부양부모 보상금 - 소득·부양 관계에 따라 차등

출처: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국가와 보훈(2005.7.5)에서 필자가 발췌 정리하였음.

보상금 지원으로 상이자 본인에게 상이보상금(10등급)을 상이도 10~100%까지 10%단위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상이도 증가에 따라 보상금지급 수준을 누증한다.[11]

7) 안형주, 「미국의 보훈제도」,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외국의 보훈제도』(2005), pp.126-127.
8) 유영옥(2005), 앞의 책, p.376.
9) 유영옥(2005), 위의 책, p.375.
10) 유영옥(2005), 위의 책, p.376.
11) 안형주, 앞의 논문, p.63.

www.kci.go.kr

특별급여 수당을 지급하는데 특별 중상이자 수당과 부양가족수당, 피복수당 등을 지급하고 미망인에겐 미망인 보상금과 부양가족수당을 지불하는데 장애자와 취학자녀에게는 별도로 지급한다.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18세미만 유자녀 보상금으로 자녀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불한다. 부모에겐 부양부모 보상금을 지불하는데 이는 소득 부양관계에 따라 차등 지불한다. 보상금 지원은 이처럼 상이자 본인은 물론이고 미망인과 자녀·부모에게까지 다양하고 충분히 지급하고 있다.

3) 미국의 의료지원

[표 3] 미국의 의료지원

구분	가료병원	의료지원
미국	제대군인병원 - 병원 157 - 진료소 862 - 요양소 134 - 정양원 42 - 종합재가 치료소 88 - 상담소 206 - 정형·보철 연구소 59	입원가료(정양원포함) - 전액지원: 상군, 연금수급자, 비전상상이자로 기준소득이하자 - 일부본인부담: 일반대군인 요양원 - 제대군인상담소 * 보훈부 의료시설과 연계한 의료교육기관 - 107개교 의과대학 - 55개교 치과대학 - 1,200개교 기타분야 연계하여 상호교류

출처: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국가와 보훈(2005.7.5)에서 필자가 발췌정리하였음.

미국 제대군인의 加療병원 현황은 병원이 157, 진료소 862, 요양소 134, 정양원 42, 종합재가 치료소 88, 상담소 206, 정형·보철 연구소 59곳으로 설립되어 있다. 정양원을 포함한 입원가료현황은 상군, 연금수급자, 비전상상이자로 기준소득 이하인 자는 전액지원이며 일반 제대군인은 일부 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진다. 제대군인 상담소로 요양원[12]이 있고 보훈부 의료시설과 연계한 의료교육 기관으로는 107개교의 의과대학과 55개교의 치과대학 그리고 1,2

12) 안형주, 위의 논문, pp.126-127.

www.kci.go.kr

00개교가 기타분야와 연계하여 상호교류 되어 지고 있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일반 제대군인에게도 일부 본인부담으로 하고 전원 의료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4) 미국 보훈정책 취업· 대부지원

[표 4] 미국보훈정책, 취업 대부지원

구분	취업지원	대부지원
구분	보훈부, 노동부, 인사관리처 직업재활(상이제대군인) - 직업 및 기술교육, 현장훈련식교육 - 제대후 12년까지 기한내에서 4년까지 지원 취업지원(참전 및 일반제대군인 포함) - 제대후 복직권보호, 사회정착교육, 직업훈련, 상담 등 - 제대군인 임용 및 복직시 우대, 직위 유지우대, 우선채용권	주택구입, 신축, 수리 보증 (30년간, 연7.5~8.5%),36천$한도 주택구입시 구입가에 따라 50%~25%내 에서 차등적으로 정부지불 보증 ※ 사업대부는 중소 기업청, 농장대부는 농무부에서 관장

출처: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국가와 보훈(2005.7.5)에서 필자가 발췌 정리하였음.

미국의 취업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보훈부와 노동부, 인사관리처로 이루어져있다.[13] 상이제대군인의 직업재활에 관련하여 직업 및 기술교육과 현장 훈련식 교육 그리도 제대 후 12년까지 기한내에서 4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참전 및 일반제대군인을 포함하여 제대 후 복직권 보호와 사회정착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과 상담, 제대군인 임용 및 복직시 우대, 직위유지 우대, 우선채용권의 혜택을 주고 있다. 대부지원으로는 주택구입, 신축, 수리보증으로 30년간, 연7.5%~8.5%, 36천$ 한도이며 주택구입시 구입가에 따라 50%~25%내에서 차등적으로 정부지불을 보증해주고 있다. 사업대부는 중소기업청, 농장대부는 농무부에서 관장한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취업지원도 참전 및 일반제대군인을 포함하고 제대 후 복직원 보호와 사회정착교육, 직업훈련, 상담, 제대 군인 임용 및 복직시 우대, 직위유지 우대, 우선채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14]

13) 안형주, 앞의 논문, pp.40-46.
14) 안형주, 앞의 논문, pp.95-96.

www.kci.go.kr

5) 미국 보훈정책의 葬祭, 기념사업

[표 5] 미국 보훈정책의 葬祭, 기념사업

구분	장제지원	기념사업
미국	대상 - 불명예 제대자 및 사형·무기 징역형 범죄자를 제외한 모든 제대군인 내용 - 국립묘지 안장 - 묘비·묘석지원 - 사망시 추모증서 제공 - 영구용 성조기 - 장제비 지원	현충일(Memorial Day) 재향군인의 날 Veterans Day) 전국 120개 국립묘지 조성 - 한국 참전기념공원, 베트남 참전기념공원 등 제대군인공원, 도로명, 기념물 건립

출처: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국가와 보훈(2005.7.5)에서 필자가 발췌 정리하였음.

미국의 장제지원도 불명예 제대자 및 사형·무기 징역형 범죄자를 제외한 모든 제대군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국립묘지 안장과 묘비·묘석 지원, 사망시 추모증서 제공과 영구용 성조기,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충일과 재향군인의 날을 기념일로 두고 있으며, 한국 참전기념공원과 베트남 참전기념공원 등 전국 120개 국립묘지를 조성하고 있다. 매년 11/11 제대군인의 날 기념(1차세계대전 종전일)[15] 11:00 워싱톤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 기념광장에서는 대통령 추념사 및 헌화, 보훈부장관 참석, 보훈단체가 헌화하고 행사의 주관은 백악관과 보훈부, 육군성, 알링톤 국립묘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하게 되나 제대군인부에서 주관한다.

2. 호주의 보훈정책

1) 호주의 보훈조직, 행정대상, 예산주요업무

[표 6] 호주의 보훈조직, 행정대상, 예산주요업무

구분	기관명	기관위상	공무원수	산하조직	행정대상	예산('04)	주요업무
호주	보훈부	장관, 독립기구	2,530	지방청6개 출장소(VAN)19개 국립묘지 관리소 5개	130만명(7.1%) 상이군인 및 미망인 참전군인(60세이상) 제대군인(6년이상)	A$106억/1,923억(5.5%)/8조 9천억원	보상금/연금 의료·대부·주택 안장지원 전쟁희생자 기념사업

출처: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국가와 보훈(2005.7.5)에서 필자가 발췌 정리하였음.

15) 안형주, 위의 논문, pp.135-140.

www.kci.go.kr

호주는 보훈부가 보훈정책을 담당[16]하여 장관은 집권당의 상·하의원 중 임명하며 보훈부의 행정업무는 차관이 담당하고, 장관은 집권당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되며 전반적인 전체방향을 설정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17]

공무원의 수는 2,530명으로 산하조직은 지방청 6개, 출장소(VAN)19개, 국립묘지관리소 5개로 이루어져있다. 행정대상은 130만명(7.1%)로 60세 이상인 상이군인 및 미망인, 참전군인과 6년 이상의 제대군인이다. 호주의 예산현황은 A$106억/1,923억(5.5%)/8조 9천억원이며 주요업무는 보상금/연금, 의료·대부·주택, 안장지원과 전쟁 희생자 기념사업에 주력하고 있다.[18]

2) 호주의 보상금 지원

[표 7] 호주의 보상금 지원

구분	상이자 본인	특별급여	미망인	자 녀	부 모
호주	상이연금 -상이도 10%이상 -특급, 중급, 일반급으로 차등 지급	간호수당 피복수당 영예수당 등 중상이부가금	유족연금 -자녀수에 따라 차등 - 재혼시중단 가사수당 -16세이하의 자녀이거나 50세이상인 경우	유족연금 -양부모사망, 상이자본인만 사망한 경우로 구분	70년대 종료, 현재는 소득보조금만 지급

출처: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국가와 보훈(2005.7.5)에서 필자가 발췌 정리하였음.

호주 상이자 본인의 연금현황은 상이도 10%이상 특급, 중급, 일반급으로 차등 지급되어지고 있고[19], 특별급여로 간호수당, 피복수당, 영예수당 등과 중상이 부가금이 주어진다. 미망인의 유족연금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재혼 시 중단되고 16세 이하의 자녀이거나 50세 이상인 겨우 가사수당이 지급된다. 자녀의 유족연금은 양부모가 사망하거나 상이자 본인만 사망한 경우로 구분되어 지며 부모의 유족연금은 70년대 종료되고 현재는 소득보조금만 지급되어지고 있다.[20]

3) 호주의 의료지원

16) 유영옥(2005), 앞의 책, p.386.
17) 유영옥(2005), 위의 책, p.386.
18) 신기현, 「호주의 보훈제도」,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외국의 보훈제도』(2005), pp.195-197.
19) 신기현, 앞의 논문, pp.220-224.
20) 신기현, 위의 논문, pp.226-230.

www.kci.go.kr

[표 8] 호주의 의료지원

구분	가료병원	의료지원
호주	지정병원 - 공립병원, 전보훈병원, 지정사립병원 계약사립병원 비계약 사립병원 - 보훈부의 사전승인 또는 응급의 경우	전면무료진료 - 중상이자, 노령, 저소득자 ※경상이자는 상이처만 약품비지원 방문간호 가정보호 수용보호 보철구 상담

출처: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국가와 보훈(2005.7.5)에서 필자가 발췌 정리하였음.

호주의 가료병원의 현황은 공립병원, 전보훈병원, 지정사립병원의 지정병원이 있고 계약 사립병원과 보훈부의 서전승인 또는 응급의 경우 비계약 사립병원이 있다. 의료지원으로는 중상이자, 노령, 저소득자는 전면무료진료이고 약품비 지원과 방문간호, 가정보호, 수용보호, 보철구 그리고 상담이 이루어진다.[21]

4) 호주 보훈정책 취업·대부지원

[표 9] 호주 보훈정책 취업·대부지원

구분	취업지원	대부지원
호주	2차대전후 실시 현재 중단 직업훈련 장려제도 시행중 ※ 노동부 직업안정 계획에 의함	주택구입, 신축, 수리시 은행융자 알선,25천A$한도 (25년간, 연6.85%) - 이자보전

출처: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국가와 보훈(2005.7.5)에서 필자가 발췌 정리하였음.

호주의 취업지원은 2차 대전 후 실시되어 현재는 중단되었으며 노동부 직업안정 계획에 의해 직업훈련 장려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대부지원은 주택구입, 신축, 수리 시 25년간 연6.85%로 은행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다.

21) 신기현, 앞의 논문, p.281.

www.kci.go.kr

5) 호주 보훈정책의 葬祭, 기념사업

[표 10] 호주 보훈정책의 葬祭, 기념사업

구분	장제지원	기념사업
호주	전몰군인 현지 묘역 안장 기념탑 건립 참전군인 전사자를 위해 전쟁묘지 관리 (뉴질랜드, 피지 등 총 65개소) 각주 수도운영 공원묘지 안장, 묘지내별도 Garden of Remembrance운용	안자크데이(4.25) 현충일(11.11) 전쟁기념관 운영 기념물 건립 계기행사 등 지원 청소년 대상 교육 한국전참전기념물

출처: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국가와 보훈(2005.7.5)에서 필자가 발췌 정리하였음.

호주의 장제지원 현황은 전몰군인 현지 묘역과 안장기념탑건립과 뉴질랜드, 피지 등 총 65개소에 참전군인 전사자를 위해 전쟁묘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주 수도에서 운영되어지는 공원묘지 안장과 묘지내 별도의 Garden of Remembrance가 운용되어지고 있다. 기념사업은 안자크데이(4.25), 현충일(11.11), 전쟁기념관 운영과 기념물 건립 계기행사가 지원되어지고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한국전참전기념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22]

3. 대만의 보훈정책

1) 대만의 보훈조직, 행정대상, 예산 주요업무

[표 11] 대만의 보훈조직, 행정대상 예산 주요업무

구분	기관명	기관위상	공무원수	산하조직	행정대상	예 산('04)	주요업무
대만	제대군인 위원회	부총리급, 독립기구	14,000명 (본부435명)	지방청 22개 보훈병원 15개 양로시설 18개 국영사업소 21개	의료·직업· 양로교육·주 택지원 안장지원	TD400억 /20,000억 (2%)/1조 3,600억원	의료·직업· 양로교육·주 택지원 안장지원

출처: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국가와 보훈(2005.7.5)에서 필자가 발췌 정리하였음.

22) 신기현, 앞의 논문, p.281.

www.kci.go.kr

대만 보훈업무의 주무기관은 제대군인위원회(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부총리급이 장을 맡고 있는 독립기구로써 공무원수는 14,000명으로 본부에 435명을 두고 있다. 산하조직으로는 지방청 22개, 보훈병원 1개, 정양원 15개, 직업재활원 10개로 이루어져 있고,[23] 행정대상은 54만명(2.4%)로 상이군인 및 유족, 전퇴역 제대군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산은 TD400억/2,000억(2%)/1조 3,600억원이며, 주요업무는 의료·직업·양로교육·주택지원과 안장교육 등을 맡고 있다.[24]

2) 대만의 보상금 지원

[표 12] 대만의 보상금 지원

구분	상이자 본인	특별급여	미망인	자 녀	부 모
대만	전·퇴역시기및 사유에 따라 연금, 일시금등 지급	상이자수당 별도지급	일반사회보장제도적용	일반사회보장제도적용	일반사회보장제도적용

출처: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국가와 보훈(2005.7.5)에서 필자가 발췌정리하였음.

대만의 보상금 지원 체제는 전·퇴역시기 및 사유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특별급여는 상이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유족의 미망인과 자녀, 부모의 보상금은 일반사회 보장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3) 대만의 의료지원

[표 13] 대만의 의료지원

구분	가료병원	의료지원
대만	15개 보훈병원 - 종합병원 : 3 - 지방병원 : 12 18개 양로원	상이처 국비 또는 감면가료 - 미취업 제대군인 : 무료 - 취업제대군인, 가족 : 감면 또는 면제 장기질환자 요양원 입원치료 보철구 공급

출처: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국가와 보훈(2005.7.5)에서 필자가 발췌정리하였음.

23) 김학준, 「대만의 보훈제도」,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2005, pp.8-12.
24) 김학준, 위의 논문, pp.13-14.

www.kci.go.kr

대만의 의료지원 체제는 가료병원은 15개 보훈병원과 18개의 양로원이 있으며, 의료지원에 있어서 미취업 제대군인은 무료로써 상이처 국비로 지원되고 취업제대군인과 가족은 감면 또는 면제되어진다. 장기질환자와 요양원 입원치료 그리고 보철구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4) 대만 보훈정책 취업·대부지원

[표 14] 대만 보훈정책 취업·대부지원

구분	취업지원	대부지원
대만	제대군인위원회 VAC조직 직접취업 VAC추천을 통한 타기업 취업 - 정부기관, 학교, 민간기업 제대군인가족취업 - VAC 본부· 산하기관	소규모사업지원 대부

출처: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국가와 보훈(2005.7.5)에서 필자가 발췌 정리하였음.

대만 취업지원으로는 제대군인위원회의 지원으로 VAC조직 직접취업과 VAC추천을 통한 정부기관이나 학교, 민간기업의 취업 그리고 VAC본부·산하기관에 제대군인가족의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지원은 소규모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5) 대만 보훈정책의 葬祭, 기념사업

[표 15] 대만 보훈정책의 葬祭, 기념사업

구분	장제지원	기념사업
대만	제대군인 사망시 국가주관으로 장제 가족 없는 경우 - 제대군인요양원이나 제대군인봉사국에서 장례,재산처리 국립묘지는 대북 五指山국군묘지 1개 운용(국방부)	10.10 국경일 행사 주도

출처: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국가와 보훈(2005.7.5)에서 필자가 발췌 정리하였음.

www.kci.go.kr

대만의 장제지원은 국가주관으로 제대군인 사망시 가족이 없는 경우 제대군인 요양원이나 제대군인 봉사국에서 장례와 재산처리를 지원하고 있고, 국립묘지는 대북 五指山국군묘지 1개가 국방부에서 운용되어지고 있다. 기념사업으로는 10.10 국경일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

Ⅲ. 보훈정책의 현실

1. 보훈정책의 현실

1) 한국의 보훈조직, 행정대상, 예산주요업무

[표 16] 한국의 보훈조직, 행정대상, 예산주요업무

구분	기관명	기관위상	공무원수	산하조직	행정대상	예산('04)	주요업무
한국	국가보훈처	장관급, 독립기구	1,186명	지방청 25개 보훈병원 5개 국립묘지 3개 *호국용사 묘지 2개	75만명 (가구,1.5%, '04.6)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 유공자	2조1,004억원 (세출'04) (1.76%)	보상금지급의 료 · 취업·대부안장·교육 기념사업

출처: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국가와 보훈(2005.7.5)에서 필자가 발췌 정리하였음.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강대국의 영향 속에 시달려온 역사적 교훈과 6·25전쟁과 월남전참전으로 수많은 참전용사와 제대국인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이 보훈정책이 열악하다. 보훈조직인 국가보훈처는 명목상 장관급이나 실제로는 차관급[25]으로 국무회의 참석도 불가하고 국회에 상임위원회도 없다.

열악한 예산으로 공무원 수는 '04년 1,186명에서 '10년에는 처본부 310명과 소속기관 968명을 포함하여 1,278명에 불과하다.[26] 또한 산하조직도 지방청 25개와 보훈병원 5개, 국립묘지 3개와 호국용사묘지,2개를 운영하는데 불과하고 시혜대상도 800만 제대군인을 감안할 때

25) 유영옥(2005), 앞의 책, p.56.
26) 국가보훈처, 서울:「2010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p.1.

www.kci.go.kr

2010년 현재 790,836명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27] 이 모든 것은 보훈 예산이 국가예산의 2조 1,004억원(세출'04, 1.76%)열악한 수준에 기인하여 보상금지급과 의료, 취업, 대부, 안장, 교육사업과 기념사업도 미비한 수준이다.

2) 한국의 보상금 지원

[표 17] 한국의 보상금 지원

구분	상이자 본인	특별급여	미망인	자 녀	부 모
한국	기본연금 -공헌과희생에 따라 203~674천원 10개등급 부가연금 -상이정도, 연령,무의탁 등 고려지급 -14~2,236 천원	간호수당 - 1·2급 상이자 -463~1,563 천원	기본연금 부가연금 -노령·무의탁 고려	6.25전몰군경의 자녀수당 미성년자녀	기본연금 부가연금 -노령,무의탁, 독자사망 등 고려

출처: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국가와 보훈(2005.7.5)에서 필자가 발췌 정리하였음.

한국의 보상금 지원제도는 상이자 본인에게 공헌과 희생에 따라 203~674천원의 기본연금이 주어지고 상이정도와 연령, 무의탁 등을 고려하여 14~2,236천원의 부가연금이 지원되며, 특별급여로 1·2급상이자에게 463~1,563천원이 지원된다. 유족의 미망인에게는 기본연금과 노령·무의탁을 고려하여 부가연금이 지원되고, 자녀에게는 6·25전몰군경의 자녀와 미성년자녀에게 자녀수당이 지급된다. 부모에게는 기본연금과 노령, 무의탁, 독자사망 등을 고려하여 부가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와 핵가족화 추세 등 사회적 변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걸맞게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적절한 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28]

27) 국가보훈처, 위의 간행물, p.2.
28) 유영옥(2005), 앞의 책, p.410.

www.kci.go.kr

3) 한국의 의료지원

[표 18] 한국의 의료지원

구분	가료병원	의료지원
한국	5개 보훈병원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병원 172개 의탁가료병원	상이자・애국지사 -전액국비 -보철구지급 -보철용차량 무공수훈자 60% 감면 유족・가족 -보훈병원 60% 감면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50% 감면 -일반・한방10~20% 감면 창군・20년이상 제대 군인 -보훈병원 50% 감면 ※ 경상이등외자 상이처 국비지원

출처: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국가와 보훈(2005.7.5)에서 필자가 발췌 정리하였음.

한국의 의료지원은 각 시에 5개의 보훈병원과 172개의 의탁加療병원이 있고, 상이자와 애국지사에게 전액국비의 의료지원과 보철구 지급, 보철용차량이 지원된다. 무공수훈자는 60%, 유족과 가족에게는 보훈병원 60%, 참전유공자에게는 보훈병원 50%와 일반・한방 10~20%, 창군・20년 이상 제대군인에게는 보훈병원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4) 한국 보훈정책 취업・대부지원

[표 19] 한국 보훈정책 취업・대부지원

구분	취업지원	대부지원
한국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35세) -알선・가점(10%) 6・25자녀(55세) 고엽제휴유의증 -본인, 자녀(35세) -알선・가점(10%)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적응교육실시 -직장알선(전역후 3년이내) -직업훈련실시	주택지원대부 - 아파트분양임대금 - 주택구입(3~5%) - 주택임차(3~5%) - 주택개량(3%) 생업지원 - 농토구입(3~5%) - 사업지원(3~5%) - 생활안정(3~5%) - 학자금(5%) ※ 장기복무 제대군인 농토, 주택, 사업, 생활안정, 학자금 대부

출처: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국가와 보훈(2005.7.5)에서 필자가 발췌 정리하였음.

www.kci.go.kr

한국의 대부·취업지원은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며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본인 그리고 자녀(35세)에게 알선·가점이 10%지원되고, 6·25자녀(55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사회적응 교육과 전역 후 3년이내 직장알선 그리고 직업훈련이 실시된다. 대부지원으로는 아파트 분양임대금과 주택구입, 주택임차, 주택개량 등의 주택지원 대부와 농토구입, 사업지원, 생활안정, 학자금등의 생업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역군인의 경우, 국가보훈적 차원에서 일반사회 보장제도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예우를 실시하고 있고,[29] 우리나라 또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5) 한국 보훈정책의 葬祭, 기념사업

[표 20] 한국 보훈정책의 葬祭, 기념사업

구분	장제지원	기념사업
한국	국립묘지 안장 -독립·국가유공자 ※ 공상공무원 제외 호국용사묘지안장 -10년이상 제대군인 -연금대상 국가유공자등 사망일시금지급 -927천~3,068천원 참전유공자장례비 지원 -150천원 영구용태극기 증정	독립기념 추모행사(10) 보훈행사(7) -현충일행사 등 5개 행사주관, 3·1절행사 등 2개 행사지원 학술회의 개최, 국외 선열유해봉환 독립운동관련 문헌 발간 및 시설물관리, 참전관련 기념조형물

출처: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국가와 보훈(2005.7.5)에서 필자가 발췌정리하였음.

한국 보훈정책의 장제, 기념사업으로는 독립·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제외) 국립묘지 안장과 10년 이상 제대군인, 연금대상 국가유공자 호국용사묘지안장, 927천~3,068천원의 상망일시금지급과 150천원의 참전유공자장례비가 지원되며 영구용태극기가 증정된다. 기념사업으로는 10개의 독립기념 추모행사와 7개의 보훈행사, 학술회의 개최, 국외 先塋遺骸奉還과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및 시설물관리 그리고 참전관련 기념조형물 사업 등이 지원되고 있다.

29) 유영옥(2005), 앞의 책, p.497.

www.kci.go.kr

2. 보훈정책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

(1) 기관위상 제고

국가보훈처가 명목상으로는 장관급이나 실제로는 차관급수준으로 국무회의 참석도 배제되어 있어 행정부에서도 위상이 낮을 뿐 아니라 제대군인이 800만으로써 국민의 1/5임을 감안할 때 당연히 존재하여야 할 상임위원회가존재하지 않아, 미국이나 호주, 대만 등 보훈선진국에서처럼 보훈정책이나 예산 등을 국회에서 수시로 획득하거나 책정 지원할 수 없다.

(2) 시혜대상 확대

시혜대상(행정대상)인원이 800만 제대군인 중에서 79만명에 불과하고 이 들은 대부분 정치성향이 극우적이어서 국민들로부터 보통 공감대나 관심을 받지 못하므로 800만 제군군인을 시혜대상으로 확대하여 건전보수 세력과 안보·호국세력으로 육성 관리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필요하다.

2) 예산적 측면

미국은 모병제로서 현역복무시 많은 봉급을 받고 한국은 의무복무제로서 거의 무급에 가까운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대 후에라도 군대에 다녀오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휴양·복지시설·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일반예산대비 미국 '04년 기준 2.8%, 호주 5.5%, 대만 2.4%에 같거나 높게 책정하여야 하나 2010년 1.71%에 지나지 않는 열악한 수준이다.

[표 21] 정부예산대비 보훈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연도별	정 부	보 훈	비 율
'80	58,040	625	1.1
'85	226,324	1,160	0.9
'90	226,894	3,742	1.6
'95	499,879	7,947	1.6
'00	864,740	12,464	1.44
'01	941,246	14,220	1.51
'02	1,058,767	16,007	1.51
'03	1,114,831	18,781	1.68
'04	1,183,560	20,787	1.76
'05	1,343,704	22,047	1.64
'06	1,448,076	23,914	1.65
'07	1,565,177	26,784	1.71
'08	1,749,852	29,752	1.70
'09	1,969,937	31,933	1.62
'10	2,012,834	34,325	1.71

출처: 2010년 국가보훈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편집

www.kci.go.kr

Ⅳ. 보훈정책 개선방향

1. 정부기구를 보훈향군부로 격상 개칭하여 800만 제대군인(재향군인회전원)을 완전수용·관리해야 한다.
2. 보훈저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국무위원회 참석토록 하여 위상강화를 하고 국회에 보훈향군위원회(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시로 보훈정책이나 예산을 수립·책정·획득 지원하여야 한다.
3. 보훈예산 증액
   1) 단기(1~2년내)에 국가예산충격을 감안하여 우선 일반예산 대비 2%대로 올리고
   2) 중·장기(5년내)에 해년마다 0.1~0.2%씩 올려 선진국 수준인 3%대로 올려야 한다.
4. 시혜폭 확대
   1) 일반제대군인까지 포함한 800만명이 대상이 되도록 의료시설과 휴양·복지시설을 확대하고 제대군인 가산점폐지에 따른 대체법안 마련하여야 하고,
   2) 6·25와 월남참전용사의 참전수당을 10만원이상 증액이 시급하고,
   3) 기존 국가유공자 예우 현실화가 절실하다.
5. 재향군인회의 개혁과 민주화 필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와 일반제대군인을 모두 포함하는 대표단체로서 막강한 800만명의 조직력과 예산을 갖춘 보훈정책과 호국안보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재향군인회가 개혁되고 민주화가 되어야 실질적인 보훈정책이 개선 될 수 있다.

6.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개선방향

1) 장군이나 비장군 출신과 관계없이 향군조직에서 성장한 사회적 역량이 있는 회원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System은 다르나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시·군구회장→시·도회장→중앙회장이 되도록 되어 있다. 조직에서 훈련경륜을 쌓은 후에 중앙회장 진출가능, 미국·호주처럼 최소한 15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 낙하산식 선거종식
미국·영국·프랑스·독일·호주의 중앙회장은 거의 비장군 출신이다.

(2) 중앙회장 및 각급회장 선출시 대의권이 있는 사람만 선거권 부여
① 읍·면·동회장, 시·군·구 회장, 시·도회장만 대의권이 있다.

(3) 압력단체로서 활동 절실
① 보훈정책개선안에 대하여 국회의원 및 정치권 대국민을 홍보하고 설득하여 각종 선거 시 참여

미국 재향군인회처럼 국회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모니터링, 분석, 우호적 인사를 적극 당선 비우호적 인사 낙선운동 전개하여 정치권의 관심과 배려를 얻어내어 보훈정책 개선안을 실현하여야 한다.

www.kci.go.kr

Ⅴ. 결 론

국가에 있어서 안보란 개인의 건강과 같다. 개인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듯이 국가도 안보가 무너지면 개인의 경제활동, 국가 위상 및 국민의 자유와 행복 등 아무것도 보장될 수 없다. 이처럼 중요한 안보란 튼튼한 국방력인 무기체계와 군대로 이루어지며 국민의 호국정신이 뒷받침될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호국정신이란 올바른 보훈정책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선진주요국가에 비하여 보훈예산과 보훈행정규모 그리고 시혜대상이 적어 보훈선진국에 비하여 열악하며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하여 열악하다. 선진 주요국가보다도 안보상황과 인구에 대한 제대군인의 숫자와 주변강대국의 영향 속에 시달려 온 지난 역사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주요국보다 더 많은 예산과 행정조직, 시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준에 합당한 보훈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기구인 보훈처를 보훈향군부로 格上改稱하여 800만 제대군인(재향군인회 전원)을 완전수용・관리해야 한다. 또한 갑작스런 보훈예산 확대 및 예산에 대한 충격이 뒤따르는 것을 감안하여 먼저 1~2년 안에 국가예산 2%수준으로 끌어올리고 5년 안에 매년 0.1~0.2씩 끌어올려 선진국 수준인 3%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훈처장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국회 내에 보훈・향군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시로 보훈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하여 획득・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훈정책 개선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보훈정책개선 전국연대를 결성하여 국회의원 및 정치권과 대국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설득하여 각종 선거에 적극참여하여야 한다. 미국 재향군인회처럼 상・하의원에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분석하여 보훈정책 개선에 적극적인 우호적인 인사를 적극 지원하여 당선시키고 비우호적인 인사는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정치권의 관심과 배려를 얻어내어 보훈정책 개선안을 실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2010, 「2010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국가보훈처, 2002, "국가와 보훈"
국가보훈처, 2002,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국가보훈처, 2002, "함께하는 보훈문화"
국가보훈처, 2000, 「주요국가의 보훈제도」,(서울:국가보훈처)
신기현, 2005. "외국의 보훈제도: 호주의 보훈제도", 국가보훈저 보훈교육연구원.
안형주, 2005. "외국의 보훈제도: 미국의 보훈제도",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www.kci.go.kr

유영옥, 2005. 국가보훈학, 서울, 홍익제.
유영옥, 2003. “국가보훈학의 개념정립과 연구방법론”, 한국보훈논총, 제1권 제1호, 한국보훈학회.
유영옥, 2003.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보훈정책 이대로 좋은가?”, 한국보훈학회 창립1주년 기념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광주・전남 재향군인회 향군신문」, 205.7.21. p.2.

www.kci.go.kr

《Abstract》

Korean Policy for Veterans and Future Directions

Kim, Sung-Dae

This study aims to suggest reform recommendations of veterans policy which meet security and economic levels of Korea by comparing Korean policy with those of advanced countries.

National security is as important as personal health. If one loses his or her health, he or she will lose everything. If national security collapses, personal economic activities, national status, freedom and happiness of general public can never be guaranteed. For national secu rity, national defense power is important and it can be achieved through strong armies and patriotism. Strong patriotism means that one protects his country at the risk of his life. It occurs when respectable treatments are given to veterans and retired soldiers. However, the budget of our veteran policy is poor. It is no more than 1.7% in comparison with 2.8% of the United States, 5.5% of Australia, and 2.4% of Thailand. Based on our security status, the number of veterans, the history of suffering and budget,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 nd beneficiaries should be expanded. However, as shocks due to sudden expansion of budge t is expected, it should be gradual to reach 3%, the levels of advanced countries: 2% withi n a year or so and 0.1~0.2% within 5 years. The office of veterans should be renamed the ministry of veterans to completely accommodate and manage about eight millions. Then th e executive officer should be renamed a minister and veterans committee should be installe d for easy budget management. Korea Veterans Committee which contains all the veterans organizations and retired soldiers should be reorganized as democratic. The committee shoul d be a strong center for promotion of reform recommendations targeting political parties an d general public. Like the veterans committee of the united states, political activities of me mbers of national assembly should be monitored, recorded and analysed. The members sho uld be divided into favorable and unfavorable, The favorable members should be appointed and the unfavorable members should be defeated in the election to induce care and conside ra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to realize the reform recommendations.

Key Words : national security, veterans' policy, patriotism, veterans' association, budget for veterans

투고일 : 2010. 6. 10 / 심사일 : 2010. 7. 10 / 심사완료일 : 2010. 8. 25

www.kci.go.kr